

농업손실 보상금

[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43461 판결]

【판시사항】

[1] 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](#)에서 정한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

[2] 甲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](#)에 의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, 甲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[1] 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\(2007. 10. 17.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공익사업법'이라 한다\) 제77조 제2항](#)은 “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, [같은 조 제4항](#)은 “[제1항](#)내지 [제3항](#)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07. 4. 12.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([제48조](#)),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([제49조](#)),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([제50조](#))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.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, 위 규정들과 [구 공익사업법 제26조, 제28조, 제30조, 제34조, 제50조, 제61조, 제83조](#)내지 [제85조](#)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,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[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](#)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[구 공익사업법 제34조, 제50조](#)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[구 공익사업법 제83조](#)내지 [제85조](#)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.

[2] 甲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\(2007. 10. 17.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공익사업법'이라 한다\) 제77조 제2항](#)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, 원심으로서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[구 공익사업법 제34조, 제50조](#)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[같은 법 제83조](#)내지 [제85조](#)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 심리했어야 함에도, 이를 간과하여 甲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[1]

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\(2007. 10. 17.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\) 제26조, 제28조, 제30조, 제34조, 제50조, 제61조, 제77조, 제83조, 제84조, 제85조,](#)

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\(2007. 4. 12.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\) 제48조, 제49조, 제50조](#)

[2]

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\(2007. 10. 17.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\) 제26조, 제28조, 제30조, 제34조, 제50조, 제61조, 제77조, 제83조, 제84조, 제85조,](#)

[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\(2007. 4. 12.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\) 제48조, 제49조](#)

【전문】

【원고, 상고인】

【피고, 피상고인】

창원시 (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)

【원심판결】

부산고법 2009. 5. 27. 선고 2008나20010 판결

【주 문】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【이 유】

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.
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2007. 10. 17.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공익사업법’이라 한다) 제77조 제2항은 “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4항은 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2007. 4. 12.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(제48조),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(제49조),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(제50조)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.

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,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, 제28조, 제30조, 제34조, 제50조, 제61조,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,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,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

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.

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, 원고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[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](#)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[구 공익사업법 제34조, 제50조](#)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[구 공익사업법 제83조](#) 내지 [제85조](#)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,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말았으니,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